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8 - 43
----------	--------

제출년월일 : 2018. 9.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유사한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노인·장애인·맞춤형복지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 설치(안 제2조)
- 기금의 계정, 기금의 용도 구분(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심의(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기금운용계획, 결산 및 보고, 결손처리(안 제11부터 제15조까지)

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8. 8. 14. ~ 2018. 9. 4. (21일간)

- 예고결과 : 부서자체의견 3건(반영 3건)

※ 조례 배열을 수정하여 상정하는 건임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3

입법예고 결과

○ 자치법규명 :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건 제출자	제출의견	반영 여부	검토결과
복지정책과	• 안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중 노인 복지계 정과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해 당해년도 사업비 제한 규정 필요	반영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④항은 ⑤항으로 하고 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은 당해년도 발생한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한다.
	• 안 제12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취소)에 대한 사항을 조문에 신설하여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함	반영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대여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안 제14조(대여금 이율)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신설 하고자 함	반영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대여금 이율) 이 조례에 따른 대여금 이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조문 배열 변경(당초 제12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취소) → 변경 제7조)

< 붙임 1 >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애인 및 맞춤형복지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안산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안산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2. 노인복지기금
3. 장애인복지기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구분) 기금의 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활계정
2. 노인복지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제5조(자활계정의 구분) 제4조제1호의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자활사업지원금
2. 생활안정자금

제6조(자활계정의 용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지원
 - 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과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 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 다.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2. 생활안정지원

가.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나.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직계비속의 대학(전문대학 포함) 학자금 융자

제7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활사업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대여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또는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노인복지계정 재원과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노인복지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의 각 구(區)지회 운영 지원

2.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관리 운영

3.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

4.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5. 충효, 예절, 기타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6.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장애인복지계정 재원과 용도) ① 장애인복지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장애인단체(보선복지부상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에 한정한다)의 육성·지원사업
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사업
3.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계정별로 각각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며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 계 위탁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계정별 업무담당팀장

④ 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은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기금을 사용한다.

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제11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기금운용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여금 이율) 이 조례에 따른 대여금 이율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결손처리)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써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안산시 사회복지기금이 승계하고, 이는 그 목적에 따라 이 조례 제4조의 구분에 따른 각 계정의 소속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로써 조성된 종전의 각 기금에 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7년도 기금운용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소관 실·과		복지정책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문 양 교
	담당·팀장 직위·성명·전화	자활지원팀장 차 현 실
	담 당 자 성명·전화	차 현 실 (행정 2379)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43
----------	------

제안년월일 : 2018. 10. 25.

제 안 자 : 안산시장

수정이유

- 자활기금의 재원을 명기하여 기금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자활계정의 용도를 자활계정의 용도와 재원까지 규정함

(안 제6조)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자활계정의 용도)”를 “(자활계정의 재원과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활계정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6조(자활계정의 용도)</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활사업지원</p> <p>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과 전세집포 임대자금 대여</p> <p>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p> <p>다.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p> <p>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p> <p>2. 생활안정지원</p> <p>가.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p> <p>나.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p> <p>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직계비속의 대 학(전문대학 포함) 학자금 용자</p>	<p>제6조(자활계정의 재원과 용도)</p> <p>① 자활계정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p> <p>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p> <p>2.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p> <p>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활사업지원</p> <p>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과 전세집포 임대자금 대여</p> <p>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p> <p>다.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p> <p>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p> <p>2. 생활안정지원</p> <p>가.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p> <p>나.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p> <p>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직계비속의 대 학(전문대학 포함) 학자금 용자</p>